

朝鮮前期 軍法の 適用과 軍令의 運用

尹 薰 杓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머 리 말
- 전시의 군령 운용 체계와 군법의 적용
- 평상시의 훈련 실시 및 근무와 군법의 적용
- 맺 음 말

1. 머 리 말

명령 체계의 확립 및 기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군법은 군 조직 운용의 중추적 요소로 일찍부터 인정되었다. 그것은 조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국공신으로 건국 직후 통치 체계의 수립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오직 상벌이 분명해야 군대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상을 무겁게 해야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벌을重하게 해야만 죽는 데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과 벌이 공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공과 죄로 다스려야 함의 중요성을 재삼 강

조하였다.¹⁾

이때 공공에 의해 인정된 죄를 다스리는 벌칙 등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군법인데, 원칙상 군 조직에 편성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과 군의 엄격한 분리에 근거한 상비군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병농일치를 지향했던 조선에서는 역제에 근거하여 여러 다양한 복무 형태로 운용하였기 때문에 군법과 일반 형률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부 사항에 있어 엄격한 구분 자체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았고 바로 그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했다.

이에 정도전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시라는 위급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군대의 효율적 통솔을 위해 죄와 벌의 공인된 체계화가 필수였는데, 이것은 군법 제정의 기반 및 근거가 되었다. 그 때문에 자연히 군법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짓는 것은 군사를 관장하는 자들의 몫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또 다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전과 같은 혼란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서 공정한 적용을 위한 운영 체계의 수립이 시급하고 필요했다. 정비 작업에 박차가 가해져 마침내 『경국대전』의 병전 용형조 등을 통해 기본 체계가 법제화되면서 안정된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 전기의 군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하되 그 과정에서 종전의 혼란상을 극복하고자 안정과 더불어 특히 공정함을 무엇으로 확보하려 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는 비단 군법의 내용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적용의 기반이 되는 군령 및 그것을 발하여 실행해 나가는 전체 구조의 이해에도 상당한 도움

1) 『朝鮮經國典』, 『政典』, 賞罰.

2) 정도전의 언급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군법은 전쟁이라는 위급 상황을 염두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군사를 관장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반 형률과 달리 병전에 수록되었으며, 이는 『조선경국전』에서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시의 명령 체계가 국초부터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군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유의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평상시의 훈련과 근무 등을 통해 명령 체계에 익숙해지는 경로 및 그 때 군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비록 전시의 명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군법을 새롭게 정비하여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나, 종전과 달리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이에 숙달되게 하는 경로를 미리 설정했던 것이 곧 이 시기 군법 운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즉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고려말에 군법은 단호하게 집행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한 채 혼란을 조성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즉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자의적 결정에 입각하여 내려진 것 못지않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동원된 군대에게 무조건 적용함에 따른 결과였다.³⁾ 위급한 상황이므로 엄중하게 군법을 적용하여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미리 충분히 대비할 틈도 주지 않고서 갑자기 실시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낳게 했으며 여기에 자의적 결정 등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전 시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시는 물론 그에 대비하여 훈련, 연습 및 평상시의 근무를 통해 미리 숙달시킨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지향했음을 밝혀 보려는 것이 본고의 기본 목표이다.

그런데 이 시기 군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 성과는 그 비중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에서 『朝鮮時代軍事關係法』이란 제명으로 『경국대전』과 『대명률』에서 관련 법규들을 발췌 번역해 놓은 것이 있다.⁴⁾ 그리고 壬亂時期 이순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군법

3) 尹薰杓, 『麗末鮮初 軍法の 運營體系와 改編案』, 『韓國思想史學』 21, 韓國思想史學會, 2003, 165~6쪽.

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軍事關係法 - 經國大典·大明律』, 1986.

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 본 연구들이 있으며,⁵⁾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군법 운영 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검토했던 성과 등이 있다.⁶⁾

그 중에서도 忠武公時代의 軍刑法을 고찰했던 것과 여말선초 개편안을 다루었던 연구 등에서 개괄적으로 군법의 운영상을 검토한 바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양태 및 방식, 그리고 그 기반이 되었던 군령의 운용과 결부시켜 파악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집중적인 고찰을 통해 그 실상을 고구하되, 당시 구조상의 특질을 해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명령 체계가 확실해야 유사시 군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으므로 군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체계의 수립은 필수였다. 하지만 사전 대비 없이 갑자기 적용시킨다는 것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 훈련과 연습, 그리고 근무를 통해 줄곧 익숙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돌발 사태로 갑자기 명령을 내린다 해도 군법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운영 체계의 수립에 부심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는 전시 작전과 관련된 군법의 적용을 군령의 운용 체계와 연계시켜 검토하고, 3장에서는 사전에 위급 상황을 대비하는 동시에 평상시의 기강 유지를 위해 훈련 및 연습, 그리고 평상시 근무를 통해 숙달되는 과정으로서의 군령 운용과 군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군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시기 군법 적용상에 나타난 특징 등을 해명하려고 한다.

5) 姜泳勳, 「李忠武公의 軍法運用 -亂中日記를 中心으로-」, 『海龜趙成都教授華甲紀念忠武公李舜臣研究論叢』, 海軍士官學校博物館, 1991; 李根寬, 「李忠武公時代의 軍刑法에 대한 試論的 考察」, 『海龜趙成都教授華甲紀念忠武公李舜臣研究論叢』, 海軍士官學校博物館, 1991; 張學根, 「壬辰戰亂期 軍指揮官에 대한 法 適用 實態 -李舜臣·元均의 錄勳을 中心으로-」, 『軍史』 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 尹薰杓, 앞 논문, 2003.

2. 전시의 군령 운용 체계와 군법의 적용

(1) 건국 직후 군법 운영상의 문제

거듭되는 외침에 맞서기 위한 방어력 강화는 고려말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에 속했다. 이때 외적을 막기 위해 출동했던 군대의 명령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다. 병사 및 장비의 동원 등도 중요했지만 사회 혼란에 편승하여 흐트러질 때로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일도 매우 필요했다. 이때 군법의 엄격한 적용은 필수였다.

마침내 고려 말 조준 등의 상소에서 입론되었던 ‘失一城堡 亡一州郡 軍法從事’가 최초로 간행된 성문법전인 『경제육전』에 수록되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⁷⁾ 단 하나의 성보나 주현을 상실하더라도 책임자를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방어상의 실패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왕조 교체의 어수선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선 방어의 일차적 책임과 권한을 지방관 및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그의 공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위 조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려웠다. 이때 고려말에 제출된 道制의 강화에 기반하여 도안찰출척사를 파견해서 관내 民官과 軍官을 엄격히 통제하자는 방안⁸⁾에 근거하여 태조 원년 9월에 제도에 안렴사를 파견하며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즉 ‘혹 敵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거나 탐욕스럽고

7)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6月 乙丑, 1冊, 556쪽(국사편찬위원회영인본, 이하동). 위 조문은 본래 “其失一城堡 亡一州郡者 處以軍法 毋得輕宥 以示勸懲”이었는데, 『경제육전』에 수록되면서 다소 수정된 것으로 생각된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經濟六典輯錄』, 다은, 1993, 246~7쪽 참조).

8) 이 문제에 관해서는 尹薰杓, 앞 논문, 2003, 170~2쪽을 참조할 것.

간사한 것으로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율을 위반하고 법을 어긴 자들을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니, 兩府 이상은 監禁하여 신문하고, 嘉善 이하는 마땅하게 處決하라고 했다.⁹⁾

태조 1년 7월에 제정된 문산계에 따르면 嘉善大夫는 종2품하계였다.¹⁰⁾ 따라서 위 하교에서 兩府 이상이란 결국 종2품상계 이상을 의미했다. 이들은 고려시대의 宰樞를 이어받아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했으며,¹¹⁾ 그에 따른 많은 특권을 누렸다.¹²⁾ 하지만 최고위직자라도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렴사로 하여금 감금하거나 처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안렴사들은 그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실례로 태조 2년에 왜구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知軍事 金鈞 등에 대해 서해도안렴사는 당시 정황만 보고했을 뿐 처결에 직접 관여한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왕명으로 관련자들에게 군률을 적용시켜 처리했을 뿐이다.¹³⁾ 이 보다 조금 앞서 왜구에게 병선 3척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처형된 高灣梁萬戶도 형조의 呈文에 의거한 도평의사사의 보고에 따라 집행되었다.¹⁴⁾ 실제로 안렴사들은 하교 받은 대로 군법을 적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안렴사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했던 제도상의 결함에서 발견된다. 즉 군정·민정을 모두 통솔케 함으로써 책임이 막중한 데도 실질적으로 지위가 낮기 때문에 장수와 수령들을 쉽게 제어할 수 없었다. 그 대신 2품 이상의 중신으로 임명한 관찰사를 파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¹⁵⁾

태조 2년 9월부터 관찰사가 파견됨에 따라 관내의 장수와 수령들 사이의

-
- 9) 『太祖實錄』卷2, 太祖 1年 9月 己丑, 1冊, 29쪽.
 10)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一潮閣, 1980, 74~5쪽.
 11) 金松姬, 『朝鮮初期堂上官兼職制研究』, 漢陽大出版部, 1998, 50~1쪽.
 12) 李成茂, 『朝鮮初期의 文·武散階』, 『朝鮮兩班社會研究』, 一潮閣, 1995, 73쪽.
 13)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7月 丙辰, 1冊, 46쪽.
 14) 『太祖實錄』卷3, 太祖 2年 3月 庚申, 1冊, 41쪽.
 15) 張炳仁, 『朝鮮初期의 觀察使』, 『韓國史論』4, 서울大 國史學科, 1978, 144쪽.

관계 및 군법의 적용 방식에 관한 조정이 필요했다. 드디어 使司의 상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이제 各官의 軍民 戶數를 籍에 기록했으나, 都節制使는 마땅히 그 籍에 의거하여 軍의 數를 작정하되, 농한기에는 각각 그 官에서 武藝를 훈련하고 유사시에는 때에 맞게 이를 초치하여 공격 수비하게 할 것이며, 만일 軍官·軍人을 즉시 起送하지 않거나, 軍器·衣甲이 堅實하지 않거나, 높고 약한 軍人을 추려서 기송하는 일이 있으면 守令 및 摠牌·頭目을 照律하여 論罪한 후에 都觀察使에게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또 都節制使로서 寇盜가 장차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즉시 나가지 않은 자나, 전투에 입하여 힘을 다하지 않은 자, 변고 없이 軍을 일으킨 자, 敵의 數가 적은데도 전병력을 동원한 자, 시기가 아닌데도 田獵을 한 자, 긴급하지 않은 公事로 軍官에게 말을 주어 道內를 橫行하게 한 자는, 觀察使가 규찰하여 신문해서 논죄하게 할 것입니다. …(왕이 그대로 따랐다).”¹⁶⁾

위에서 일단 군사 관계는 도절제사로 하여금 총괄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권한과 함께 책임에 따른 처벌 관계도 명확히 했다. 즉 官別로 軍의 數를 정한 뒤에 농한기에는 훈련을, 유사시에는 동원에 따른 전투를 책임 지우는 것과 아울러 휘하 인원에 대한 징계도 담당하게 했다. 의무적으로 도관찰사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위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처리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민사가 아닌 군사에 관해 ‘守令 및 摠牌·頭目을 照律하여 論罪한다’고 했을 때 일반 형률 보다 군법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시 군대를 지휘하면서 지니게 되는 전결권의 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찰사는 도절제사의 보고를 받고서 이를 검토하거나 징후를 살피는 상황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 정리된 것을 조정에 최종적으로 신문하여 죄를 논하게 하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관찰사의

16)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2月 甲午, 1冊, 100쪽.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도절제사가 휘하 인원들에 대해 자의로 군법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양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혹시 빚어질지도 모르는 군법 적용의 폐해나 남용 등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위 상언에 따르면, 군관·군인을 즉시 기송하지 않거나 늑거나 약한 자를 골라서 보내거나, 軍器·衣甲이 견실하지 않으면 수령 및 총패·두목 등에게 죄를 묻고, 寇盜가 오는데 즉시 나가지 않거나 전투에 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도절제사를 다스린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누구를 처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전시와 평상시를 막론하고 군대의 통솔 및 운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임으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해 놓고 그에 따라 처벌하게 했다.

하지만 사안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군법은 늘 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형을 부과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무조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지나칠 수도 있었다. 실제의 사례를 보면, 태종 9년에 풍해도경차관으로 나갔던 韓雍의 보고에 의거해서 도관찰사 威傳霖 이하에 대해 의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照律하였다. 즉 ‘威傳霖은 申上해야 할 것을 申上하지 아니한 죄로 笞 40, 병마도절제사 金繼志는 정원 외에 함부로 軍兵을 충당한 죄로 杖 100, 만호 朴貴俸과 崔安海가 군인을 調發하여 시기가 아닌데도 사냥한 죄는 笞 40에 해당합니다’라고 했다.¹⁷⁾ 국왕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처리 방식 및 형량의 부과 형태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使司의 上言대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제대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관찰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되었다.¹⁸⁾

17) 『太宗實錄』卷17, 太宗 9年 5月 戊子, 1冊, 489쪽.

18) 倭船 3척이 삼척부를 노략질하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쫓아가지 못한 千戶의 처벌을 관찰사가 청했던 일을 통해 재차 확인된다(『太宗實錄』卷14, 太宗 7年 7月 丁丑, 1冊, 407쪽).

그러나 책임자급에 대한 형량만큼은 보고 받은 뒤 중앙에서 적당히 조율하여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몹시 위급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전결권으로 처리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앙에서 결정하여 처리했다.

위 풍해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고의로도 관찰사 등이 보고하지 않을 때가 문제였다. 道制에 근거해서 수립된 지방군 통솔체계가 제대로 운용되었다면 서로 얽매하거나 거짓, 과장, 축소 보고가 어렵고 그에 따라 공정한 법 적용이 가능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종전처럼 중앙에서 별도로 파견된 사신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다.¹⁹⁾ 그러나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신의 잦은 파견은 군의 통솔체계 및 그에 의거하는 군법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다.

‘失一城堡 亡一州郡 軍法從事’의 『경제육전』 조문을 근거로 주로 도제에 의거한 통솔 체계에 입각하여 군법을 적용시키는 운영 방식은 건국 직후 왕조 교체의 어수선했던 정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수세적이라 전시 작전에 입각했던 군령의 운용에 결부된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로 인해 일반 형법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실제 처벌 과정에서도 두드러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태종 후반 특히 세종대에 들어와 정세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북방 개척의 추진 및 왜구의 근절을 위한 대마도 정벌 등이 시도되면서 서서히 공세적인 자세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군법의 적용 양태도 달라졌다.

19) 경차관을 보내거나(『太宗實錄』 卷3, 太宗 2年 3月 甲申, 1冊, 227쪽;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4月 辛未, 1冊, 353쪽;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5月 戊辰, 1冊, 440쪽;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5月 戊子, 1冊, 489쪽), 체복사(『世宗實錄』 卷4, 世宗 1年 5月 甲寅, 2冊, 315쪽), 해도찰방(『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1月 辛亥, 1冊, 427쪽) 등을 파견하여 처리하기도 했다.

(2) 세종 즉위 이후 정책의 변화와 운영 체계의 재정비 추진

세종이 즉위한 이후 체제 정비를 통해 어느 정도 내정이 안정되었던 것과 더불어 점차 외부에 대해 그 동안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강역의 안전한 수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 실천해 나갔던 정책의 추진에 따른 결과였다.²⁰⁾

그 첫 번째 시도가 세종 1년의 대마도 정벌이었다.²¹⁾ 그런데 당시 전투에서 패배했던 지휘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²⁾ 원정군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주로 방어에 실패했을 때 군법으로 다스렸던 경우와 구별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그 다음의 대규모 원정이 세종 15년에, 그 뒤에도 오랫동안 두통거리로 남았던 李滿住 등이 이끌던 婆猪野人을 향해 단행되었다.²³⁾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전에 없이 군령의 세세한 부분까지 마련되었고, 군법 적용에 대한 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처음 (崔)閔德이 發軍할 때 諸將帥를 모아 놓고 敎書와 事目을 보이고, 인하여 取招하기를, “主將條令을 혹 여기는 자가 있으면, 삼가 敎書에 의해 軍法으로 從事할 것이니,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軍令에, “一 彼人과 對敵할 때 지금 내린 勅書 및 永樂年間に 宣諭한 聖旨의 辭緣을 開說하지 말고, 일체 頒降한 敎書에 의해 諸將들은 오로지 主將의 令을 따른

20) 朴元燾,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21) 이 문제에 대해 장학근, 『대마도 정벌』, 『조선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2006이 참고된다.

22) 『世宗實錄』 卷5, 世宗 1年 8月 丙戌, 2冊, 332쪽; 『世宗實錄』 卷5, 世宗 1年 8月 甲午, 1冊, 333쪽.

23) 강성문, 『世宗朝의 婆猪野人 征伐戰』,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鳳鳴, 2000.

다. 一 主將이 角을 一通하면 諸將은 應해야 하는데, 金鼓도 같으며, 麾를 左로 擡히면 左로, 右로 擡히면 右로 간다. 鼓를 치면 나아가고, 金을 치면 그치며, 再金하면 곧 물러나되, 일체 主將의 令에 따른다. 一 臨戰에 麾에 不應하는 자, 鼓를 듣고도 不進한 자, 將帥를 구하지 않은 자, 軍情을 누설하는 자, 妖言을 發하여 衆者를 惑하게 하는 자는 大將에게 告하여 斬한다. 一 그 牌를 잃고 他牌를 따르는 자, 章을 잃은 자, 떠드는 자는 罰한다. 一 伍 중에서 三人을 잃은 자는 罰하고, 牌頭를 구하지 않은 자는 斬한다. 一 鼓를 천천히 치면 천천히 가고, 빨리 치면 빨리 가며, 法을 따르지 않은 자는 行陣에는 罰을 주고, 臨戰에는 斬한다. 一 賊里에 들어가서 寢고 어린 남녀는 擊刺하지 말며, 장정이라도 항복하면 죽이지 말라. 一 賊里에 들어가 令을 내리기 전에 財寶를 收拾하는 斬한다. 一 險隘를 行軍하다가 갑자기 賊人을 만나면 그치고 공격하며, 角을 불어 그 軍에게 보고하고, 諸軍은 角으로 主將에게 보고한다. 후퇴하여 패하는 자는 斬한다. 一 牛馬鷄犬을 죽이지 말고, 짐을 불태우지 말라. 一 대저 攻伐法은 義로서 不義를 誅滅하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스려서 萬全을 기하는 것이 義인데, 만약 老幼를 잡아죽이고, 唐人을 죽여 軍功을 擧고자 條令을 犯하는 자는 모두 軍法으로 시행한다. 一 越江時 반드시 伍伍什什씩 次第로 上船하고, 먼저 타려고 다투어 차례를 잃지 말 것이며, 어기는 자는 摠小牌와 함께 論罪한다. 一 營에 머무는 使客과 諸將을 접대할 때에 京來軍官들은 칼을 차고 左右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어기는 자는 5日料를 正지하며, 行陣하면 旗鉦鼓纛을 令에 따라 捧持한다. 一 鎮撫 一員과 京來軍官 四員은 날마다 輪番으로 營門을 把直하며 行路人을 제외하고 各軍節制使 및 領軍差使員等은 伴人 一名만 거느리고 들어온다. 一 主將이 내린 令은 鎮撫所에서 전해 일체 動靜에 應하되 諸軍은 鎮撫所에서 令을 듣는다. 一 各牌 伺候一人은 不離하고서 令을 듣는다. 一 만약 人馬가 死亡하면, 말은 뼈를 거두어 묻어 주고, 사람은 신고 온다”고 했다. 令을 마치고 諸將들과 함께 언약하기를, “오는 19일에 모두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問罪하는데 만일 비바람이 심하여 날씨가 어두우면 20일도 가하다” 하고, 자리에 나아가서 서로 拜고 헤어졌다.²⁴⁾

24) 『世宗實錄』 卷60, 世宗 15年 5月 己未, 3冊, 473쪽. 당시 軍법 마련, 계획 수립 등에 관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방어적,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위해 군령에 관련된 사항들이 망라되어 정리되었으며, 그에 따른 군법의 적용 내용도 사안별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처벌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16개조로 된 군령에는 主將에서 일반 병사에 이르기까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행동, 명령의 전파 방식, 임전 수칙 및 행군시 각종 주의 사항, 적진에서의 엄금 행위, 그리고 이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일부 조문에는 세부적인 면까지, 예컨대 罰로서 그쳐야 할 것과 斬해야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규정하여 집행에 따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되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이 없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다.

앞선 고려시대에도 현종 때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해 대군을 동원하면서 효율적으로 통솔하고자 ‘行師之令’의 이름으로 군률을 제정 공포하였다.²⁵⁾ 양자를 비교해 보면, 우선 고려의 것은 대개 방어 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지에 원정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정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旗角金鼓之節에 의거하여 행하는 좌우진퇴에 관한 사항 등도 빠져 있다.²⁶⁾ 그밖에 다른 것들도 간혹 더 있지만, 將帥를 구하지 않은 자, 軍情을 누설하는 자, 妖言을 發하여 衆者를 惑하게 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것 등은 서로 공통된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종 3년 7월에 병조에서 외방으로 진법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면서 올렸던 ‘陣圖之法’이다. 行陣, 結陣, 應敵, 教場 순으로 편을 나누어 진법의 내용 및 연습 절차 등에 대해

여했던 자는 원정 지휘관뿐만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문신인 安崇善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文宗實錄』 卷13, 文宗 2年 4月 戊寅, 6冊, 485쪽, 安崇善卒記 참조).

25) 『高麗史』 卷85, 刑法志 2, 軍律, 睿宗 1年 1月, 中冊, 870쪽(연세대학교동방학연구소영인본 -이하동).

26) 尹薰杓, 「高麗時代 軍律의 構造와 그 性格」, 『史學研究』 69, 韓國史學會, 2003.

서술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무릇 出軍했을 때 中衛에서 陣을 돌아다니며 搖鐸하면서 守하는 내용’을 수록했다. 그 守에는 旗角金鼓之節, 坐作進退之節을 어긴 자 및 亡章服者는 主將에게 보고해 문득 斬한다는 것과 5人 중에서 2人을 잃으면 나머지 구하지 않은 3人을 벌한다는 것 등이 실려 있다.²⁷⁾ 이것으로 위에서 최윤덕이 發軍할 때 제장을 집합시키고 보여준 사목의 旗角金鼓之節에 의거한 좌우진퇴에 관한 사항들이 병조에서 올렸던 陣圖之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婆猪野人の 정벌을 위해 마련했던 군령은 이전부터 내려왔던 것에 다 정벌이라는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가미하고, 여기에 세종 즉위 이후 중외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했던 진법 훈련의 내용 및 그 성과 등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었다. 특히 정벌을 앞두고 동원된 군대에게 갑자기 나누어 주고 억지로 따를 것을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익혀 왔던 것을 실천에 임해서 자연스럽게 구현케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 원정에서 얻었던 성과들은 곧 바로 재정리되어 조금 뒤 河敬復 등에 의해 편찬된 『陣書』의 군령편에 수록된 것으로 파악된다.²⁸⁾ 그렇게 보는 이유로 우선 형태상으로, 내용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원정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들어간 몇몇 조, 예컨대 ‘賊里에 들어가서 늑고 어린 남녀는 擊刺하지 말며 …’라든가, ‘대저 攻伐法은 義로서 不義를 誅滅하는 것이니 …’ 등은 제외되었다. 그 이외에는 대개 유사한데 『陣書』의 군령편에는 다소 세부적인 면에서, 특히 군영에서의 행동거지와 관련된 금령 따위가 보강되었다. 원정 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하는 것을 위주로 했겠지만, 『陣書』는 훈련을 염두에 두었던 만큼 단호히 처리하게 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한 사연, 예컨대 비 등의 천재지변으로 기일에 늦은 자는 용서하나 그렇지 않으면 斬하도록 했다. 원정 때는 특별히 사정을 고려

27) 『世宗實錄』 卷12, 世宗 3年 7月 己巳, 2冊, 441~2쪽.

28) 『世宗實錄』 卷61, 世宗 15年 7月 乙卯, 3冊, 488~9쪽.

한 측면이 보이지만, 『陣書』에서는 그런 점들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 위반자들을 대개 참형으로 다스리도록 했다.

마침내 『陣書』의 군령편 간행을 통해 실전시와 훈련시, 유사시와 평상시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군령 및 군법 운영 체계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실전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보강, 부분 수정 등을 거치면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추진되기도 했다.²⁹⁾

먼저 활용을 보면, 육진 개척을 주도하던 김종서의 상언에 의하면 伍를 잃고서 離次한 자와, 坐作을 깨닫지 못하는 자, 기일을 어기고 이르지 아니한 자, 도주한 자를 모두 군법으로 다스렸다가 불만을 사기도 했다고 한다.³⁰⁾ 또 항복한 왜인을 공을 바라고 함부로 살해한 崔滄 등을 참형에 처하기도 했다.³¹⁾ 한편 문종 즉위년에 명나라에 사은사를 파견하면서 당시의 정세를 염려하여 호송군을 따라 보냈다. 그 때의 設備條件에 護送軍이 만약 敵軍과 對陣할 경우의 군령 운용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陣書』의 군령편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斬한다는 표현 대신 말미에 군령을 거스르는 자는 군법으로 논한다라고 했다.³²⁾ 이로써 실제 敵軍과 對陣했을 때 『陣書』의 군령편 기록대로 위반자를 군법으로 처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보강, 부분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확고한 체계화가 추진되었다. 그것은 문종 때 이른바 오위 조직으로의 지휘 체계 개편 작업과 결부되었다. 즉 오위 조직 수립의 기반이 되었던 『新陣法』이 문종 1년에 편찬되었는데 그 안에 군령편도 포함되었다.³³⁾ 이때 임전 수칙 등의 기본 요목은 앞서의

29)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

30) 『世宗實錄』 卷88, 世宗 22年 1月 庚申, 4冊, 263쪽.

31) 『世宗實錄』 卷100, 世宗 25年 4月 丙午, 4冊, 474쪽.

32) 『文宗實錄』 卷3, 文宗 卽位年 8月 乙亥, 6冊, 267쪽.

33) 『新陣法』, 즉 『五衛陣法』의 군령편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군형법 적용의 범원성을 얼마나 지녔는지에 대한 문제가 李根寬, 앞 논문, 1991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었다. 그 논문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졌던 것으로 추론했는데,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가 찾아지므로 어느 정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오위의 설치와 관련해서 下營과 더불어 각군영의 운영, 그리고 軍行 및 行軍時 내용에 대한 보강 및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다. 더하여 交戰時 伍以上の 단위 부대장들에게 달아나는 대원들을 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적으로 부여했던 점 등이 특징이었다.³⁴⁾

오위 조직의 수립과 결부되어 편찬된 『新陣法』의 군령편은 단지 훈련에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사시 군법 적용의 근거가 되었다. 성종 때 北征軍士로 나갔다가 戰陣에 임하여 도망친 자에 대해 『陣法』 軍令條에 의거해 참형을 선고했다.³⁵⁾ 중종 때에는 적에 대한 협격을 약속하고도 머뭇거리며 진격하지 않았던 隊將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陣法』 軍令條에서 찾았다.³⁶⁾

그러므로 『(新)陣法』 軍令條는 단순한 훈련 교범에서 그치지 않고 유사시 군령 운용 체계의 근간으로서 군법 적용의 실제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법전의 조문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녔다.³⁷⁾ 특히 左右副將으로서 적과 싸우는 만호를 구하지 않았던 자들의 죄는 군령에 있는 것이므로 만일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뒷일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 속에는 그러한 인식들이 확고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3) 『경국대전』의 편찬과 군법 적용 범주의 정리

성종 때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그 동안 군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빚어

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文宗實錄』 卷8, 文宗 1年 6月 丙戌, 6冊, 403쪽.

35) 『成宗實錄』 卷290, 成宗 25年 5月 甲辰, 12冊, 534쪽.

36) 『中宗實錄』 卷60, 中宗 23年 2月 庚午, 16冊, 637쪽.

37) 이 문제가 일찍이 『新陣法』, 즉 『五衛陣法』의 군령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루어진 바가 있었다(李根寬, 앞 논문, 1991, 620쪽).

38) 『成宗實錄』 卷237, 成宗 21年 2月 甲辰, 11冊, 574쪽. ‘尹弼商議’

졌던 논란 가운데 특히 전시가 아닌 때의 처리 방침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바로 앞 절에서 검토했던 바의 원칙대로 처결하면 되었다. 그러나 국경에서 단기간에 걸쳐 소규모로 치러졌던 국지적인 전투라든가 내부의 치안 및 군의 기강 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행할 때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였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와 똑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다.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엄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혹한 처결에 따른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명령 체계를 훼손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 기준과 범주 따위를 명확히 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반발에 따른 불상사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드디어 새로 편찬된 『대전』³⁹⁾ 병전 용형조에 ‘장수로 명을 받아 외방에 있는 자는 杖 이하는 직단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⁴⁰⁾ 이는 외방에서의 비교적 경미한 군령 위반 사항이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장수들로 하여금 직접 처벌하게 하되 중죄에 속하는 도·유·사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결하도록 법제화했음을 의미했다. 대체로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중벌에 처함을 의미하며 흔히 참형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⁴¹⁾ 따라서 중벌을 부과하고자 할 때 중앙에 보고하게 했던 것은 장수에 의해 군법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비록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시기와 상황에 구해됨이 없이 마구 영을 내리고 이것을 어기는 자를 무조건 군법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해를 당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장수들의 권한이 마구 흔들려도 안되었다. 이에 시기와 상황에

39) 본 기사가 성종 6년 7월 계해조이므로 성종 16년의 을사대전은 아니고 그 이전에 간행된 갑오대전에 해당된다.

40) 『成宗實錄』卷57, 成宗 6年 7月 癸亥, 9冊, 242쪽.

41) 尹薰杓, 앞 논문, 2003, 16쪽.

적절하게 행사됨으로써 휘하의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었다. 심지어 賊變이 일어나면 당상관, 공신, 의친도 모두 군법으로 다스리게 했다.⁴²⁾ 당상관, 공신, 의친은 신분상 최고위층에 속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유사시 군법으로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은 賊變을 당해 군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외방 장수 누구에게나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왕명으로 매우 특별한 임무를 띠고 떠나는 중신으로 임명된 사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점차 제도화시킴으로서 그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당히 적용되도록 하였다.

마침내 『경국대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장수로서 명을 받아 외방에 있는 자는 堂上官, 議親, 功臣 이외에는 杖刑 이하의 경우 直斷한다. 諸鎭將은 笞 이하는 직단하고 杖 이상은 主鎭將에게 傳報한다<臨敵하였을 때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⁴³⁾

먼저 장수 가운데 主鎭將과 諸鎭將을 구분하여 지위에 따른 권한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臨敵, 즉 전쟁시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나누어 행사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당상관, 의친, 공신에 따른 규정도 함께 명시해서 그들의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는 것과 더불어 臨敵의 경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즉 臨敵時 장수들로 하여금 군령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군법을 적용하여 처단했다. 그 때의 군령이 이미 『(新)陣法』 軍令條에 마련되어 있었고 사전에 습진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숙달시켰다. 그리고 臨敵時가 아니라면 군령의 운용과 결부하여 사안 및 직위, 신분에 따라 계문하

42) 『成宗實錄』 卷58, 成宗 6年 8月 壬午, 9冊, 249쪽.

43) 『經國大典』 卷4, 兵典, 用刑.

거나 혹은 직단으로 처결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3. 평상시의 훈련 실시 및 근무와 군법의 적용

(1) 습진·대열

전시를 당해 명령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자 엄하게 군법을 적용하는 것은 설사 일시적 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오히려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평상시 익숙해지도록 숙달시켜 놓았다가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에 조선에 들어와 전시기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개편을 추진하면서 평상시의 훈련 실시나 근무 등을 통해 명령 체계에 숙달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거나 어기는 자에 대해 왕왕 군법을 적용함으로써 엄격한 기강 유지는 물론 만약의 사태에 충실하게 대비하게 했다.

특히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진법 훈련을 뜻하는 습진·대열⁴⁴⁾ 사냥하면서 실전 위주의 군사 훈련을 행하는 打圍·講武⁴⁵⁾ 등에서 군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입직, 시위 등의 근무를 수행하는 금군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연습을 실시하면서 위반자에 대해 적용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정례화된 훈련이나 연습의 시행을 통해 사전에 숙달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44) 왕의 참관하에 행하는 습진으로 매년 9월·10월 중에 都外에서 실시하였다(韓汝旂等, 『譯註經國大典註釋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624쪽).

45) 打圍는 田獵·山獵을 가리킨다. 진렵할 때 짐승을 포위하여 잡았으므로 진렵을 打圍라고도 하였다. 講武는 왕의 親臨下에 실시하는 수렵대회로서 군사훈련의 일종이었다(韓汝旂等, 앞 책, 624~5쪽).

먼저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체계로 진법 훈련을 실시했다.⁴⁶⁾ 그 뒤 몇 차례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세종 3년 6월에 이르르면 국왕의 친림하에 거행되는 진법 훈련인 대열의 의례가 일단 갖춰졌다.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실제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의식을 거행하였다.

大將이 맹서하기를, ‘지금 대열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싸움을 가르치는데, 나아가고 물러서며,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한결같이 軍法대로 하라. 명령대로 하면 常償이 있을 것이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常刑이 있을 것이니, 가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⁴⁷⁾

실전과 흡사하게 아군끼리 진영을 나누고 대열을 이뤄 서로 대전하는 식으로 훈련하는 것이었던 만큼 원칙상 모든 것을 군법에 맞게 실시해야 했다. 그러므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실제 전투에서 군령을 위반한 것처럼 간주하여 군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공고했다.

대열 의례가 갖춰진 다음 달인 세종 3년 7월에 병조에서 ‘陣圖之法’을 올리면서 그 동안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외방으로 진법 훈련을 확대했다.⁴⁸⁾ 그런데 陣圖之法에서는 군사를 출동시킬 적에 中衛에서 陣을 돌아다니며 搖鐸하면서 승하기를, ‘在陣者는 旗角과 金鼓의 절차를 따라 앉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나며, 그 차서를 잃지 말고, 떠들거나 문란하지 않도록 해서 兵法을 범하지 말라’고 했다.⁴⁹⁾ 앞의 대열할 때 대장이 맹서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승을 재진자 모두에게 하달했다. 그 뒤에 상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수록되었다. 2장에서 서술했듯이 위반자에 대해 군법으로 다스렸으며 이것은 실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46) 尹薰杓, 앞 논문, 2004.

47)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6月 壬辰, 2冊, 434쪽.

48)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7月 己巳, 2冊, 441쪽.

49) 동상.

중앙 군제가 오위 조직으로 개편되었다라든가 습진·대열에서 군령을 위반한 자를 군법으로 다스리는 체제는 변함이 없었다. 오위 조직으로의 개편의 계기를 마련했던 문종 1년의 『신진법』에서도 ‘대열 의주’를 통해 앞서 언급했던 세종 3년에 제정된 대열 의례에서 대장이 맹서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실어놓고 그대로 시행케 했다.⁵⁰⁾ 다만 세종 3년에 제정되어 『속병전』에도 수록된 지방군의 진법훈련체계가 일부 수정되었고, 특히 교범으로 『신진법』을 일부 간추린 『略抄陣書』를 사용하게 했던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⁵¹⁾

그런데 세조 4년에 이르러 습진할 때에 군령을 범한 자로 杖 80 이하는 주장과 대장이 직단하고, 당상관은 繫頸하고서 계문하게 했다.⁵²⁾ 이때 직단의 범위가 다시 조정되었는데, 태종 때 제정된 ‘강무사의’에 따르면 違令者는 笞 50에 처하나, 그 정도가 무거우면 杖 80으로 다스리게 했다.⁵³⁾ 하지만 대열 때 교본으로 사용하는 『신진법』 등의 진법서에서는 군령을 위반하는 재진자는 대개 참형에 처해졌다. 아무리 실전을 방불케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서 전시 때처럼 처결한다는 것은 여러 사정상 곤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무사의’의 군령 위반자 중에 죄질이 무거운 자를 杖 80에 처하라고 했던 것을 원용하여 이를 기준선으로 삼아 그 이상이 되는 몹시 위중한 자는 계문하여 처리하되, 杖 80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을 직단으로 다스리게 했다.

『경국대전』에서는 기왕의 습진 제도⁵⁴⁾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법제화시켰다.⁵⁵⁾ 그리고 군정이 해이해졌다며 대열 때 조금이라도 위반하거나 착오를 일으킨 자는 군법으로 시행하라고 전국에 유시하기도 했다.⁵⁶⁾ 다만 처

50) 『文宗實錄』卷8, 文宗 1年 6月 丙戌, 6冊, 403쪽.

51) 『端宗實錄』卷10, 端宗 2年 3月 辛酉, 6冊, 675쪽.

52) 『世祖實錄』卷11, 世祖 4年 閏2月 甲子, 7冊, 257쪽.

53) 『太宗實錄』卷27, 太宗 14年 2月 己巳, 2冊, 8쪽.

54) 『成宗實錄』卷3, 成宗 1年 2月 癸酉, 8冊, 472쪽.

55) 『經國大典』卷4, 兵典, 教閱.

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국왕이 대열, 또는 강무 등에 참석하고자 행재소로 갔을 경우에 병조에서는 당상관, 의친, 공신 및 군사 이외에 杖 80 이하는 직단하라고 했다.⁵⁷⁾ 바로 위 직단의 범위에서 언급했던 바의 당상관, 杖 80 이하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의친, 공신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사회 구조상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군사가 제외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었다. 그것은 군사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경국대전』에 의하면, 행재시에는 도총부의 대장, 위장, 부장이 각기 소관 인원의 범위에 대하여 笞 이하는 직단하고 杖 이상은 왕에게 보고하게 했다.⁵⁸⁾ 이렇게 해서 대장 이하가 전시가 아닌 평상시 훈련하거나 기타 다른 일에도 휘하의 군사에 대한 직단권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적용 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행재시에만, 그것도 笞刑이라는 가장 가벼운 위반자에 대해 인정했다.

진법 훈련을 실천에 버금갈 정도로 실시하면서 군령 위반자들에 대해 군법으로 다스리고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휘하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직단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철저한 숙달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타위·강무

타위란 사냥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강무는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의례를 갖추고서 실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⁵⁹⁾ 태종 때부터 군대를 동원하여 사냥하면서 훈련하되⁶⁰⁾ 제대

56) 『成宗實錄』卷205, 成宗 18年 7月, 壬子, 11冊, 232쪽.

57) 『經國大典』卷4, 兵典, 用刑.

58) 동상.

59) 타위와 강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강무의 경우 태종 때 『講武事

로 못하면 군법으로 다스렸다.⁶¹⁾ 특히 태종 14년 병조에서 올린 ‘강무사의’에 따르면, 徒卒로 하여금 相雜하지 않도록 하고, 駕前에서는 짐승에게 要射하지 못하고, 대소인이 圍內에서 先行하지 못하게 하는데, 습을 위반하는 자는 笞 50에 처하되, 重者에게 杖 80을 부과하며 2품 이상은 계문하여 과죄하고, 3품 이하는 직단해서 軍法을 엄하게 했다.⁶²⁾ 이렇듯 군령의 내용, 처벌 규정, 심지어 직단권까지 시행케 함으로써 실전에 흡사하게 훈련을 실시해서 효과를 크게 높이려 했다.⁶³⁾

강무 때 시행하는 의례 및 그 방식, 그리고 군령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세종 때 일단 정리되었고, 그 내용이 『세종실록』 五禮 軍禮 儀式 講武儀에 수록되었다.⁶⁴⁾ 그 뒤 『국조오례의』 嘉禮 講武儀에 다시 세밀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오위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전렵을 행하면서 軍機를 失誤했던 대장·위장·훈도 등은 법에 따라 참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전례에 따라 杖 100에 처하겠다는 것에서 확인된다.⁶⁵⁾ 참형이란 결국 군법을 적용했음을 뜻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⁶⁶⁾

宜’가 제정되었으며, 이것이 세종 때 구체화되어 ‘講武儀’가 되었다(李瑁秀,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 45,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260~1쪽). 그 뒤에 다시 『國朝五禮儀』 嘉禮 講武條에 상세한 절차가 마련되었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앞 책, 204쪽).

- 60) 삼군을 동원하여 교외에서 사냥해서 얻은 짐승들은 종묘에 올리며, 그 때 義興府堂上들로 하여금 군사에게 진퇴좌작의 절차를 가르치며, 군의 기를 본 뒤에 습을 쫓게 할 것을 왕명으로 지시했다(『太宗實錄』 卷18, 太宗 9年 12月 庚子, 1冊, 519쪽).
- 61) 『太宗實錄』 卷4, 太宗 2年 9月 丁未, 1冊, 247쪽.
- 62)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2月 己巳, 2冊, 8쪽.
- 63) 군사들은 평소에 진법 훈련을 받아오다가 강무를 통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게 된다(李瑁秀, 앞 논문, 260쪽).
- 64) 李瑁秀, 앞 논문, 261~2쪽.
- 65) 『端宗實錄』 卷12, 端宗 2年 10月 庚辰, 6冊, 709쪽. 연산군 시절에도 타위하면서 군령에 따라 장수의 영을 어기거나, 함부로 나아가고 물러난 자를 참형에 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杖 100에 처한다고 했다(『燕山君日記』 卷51, 燕山君 9年 10月 壬寅, 13冊, 578쪽).

그러나 타위·강무 때 위반자에 대해 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곤란했다. 아무래도 臨敵失律과는 상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⁶⁷⁾ 대체로 『경국대전』의 행재시 이외의 평상시에는 사죄에 해당하는 군령을 범한 자에 대하여 諸將이면 杖 60, 軍士면 杖 90에 처한다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⁶⁸⁾ 특히 국왕이 참석하는 강무에서는 앞서 습진·대열을 서술할 때 언급했듯이 병조에서 당상관, 의친, 공신 및 군사 이외에 杖 80 이하는 직단하고 도총부의 대장, 위장, 부장이 각기 소관하의 범죄에 대하여 杖 이하는 직단하고 杖 이상은 왕에게 보고하였다.⁶⁹⁾

타위·강무를 실시하면서 마치 실전처럼 군령 위반자들을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법제화되었다.⁷⁰⁾ 평상시에도 훈련을 통해 군령에 익숙해지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군법을 적용함으로써 갑자기 출정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3) 평상시 입직, 시위 근무와 비상소집 훈련

상시 중앙에 머물렀던 금군은 국왕 신변을 보호하는 시위와 왕실을 호위하는 입직이 주된 임무였다.⁷¹⁾ 맡은 일이 중요했던 만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엄벌에 처했는데 정도가 극심할 경우에는 군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는데,⁷²⁾ 그 과정에서 위반하는 자는 군령을 범했다는 이유로 군법으로

66) 『世祖實錄』 卷26, 世祖 7年 10月 己卯, 7冊, 492쪽; 『成宗實錄』 卷205, 成宗 18年 7月 壬子, 11冊, 232쪽; 『成宗實錄』 卷233, 成宗 20年 10月 乙酉, 11冊, 521쪽.

67) 『成宗實錄』 卷87, 成宗 8年 12月 乙未, 9冊, 534쪽.

68) 『經國大典』 卷4, 兵典, 用刑.

69) 동상.

70) 강무는 엄격한 軍律이 적용되는 훈련이었다고 한다(李瑀秀, 앞 논문, 262쪽).

71) 박홍갑, 「조선초기 금군(禁軍)과 숙위(宿衛)체제」,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명령 체계에 익숙해 지도록 숙달시킴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건국 직후부터 이유 없이 숙위에 나오지 않은 자와 入番했다가 이유 없이 몇대로 나간 자, 그리고 이유 없이 도성 일대를 순찰하는 순작에 나오지 아니한 자는 담당 기구가 당시 최고 군령기관인 의흥삼군부에 보고하여 추고해서 죄를 주되, 가벼운 자는 환직시키고, 중한 자는 계문하여 파직시키고 충군했다.⁷³⁾ 그런데 당시 숙위의 주축이었던 갑사는 친군이라 해서 절제사조차 제어하기 어려웠다.⁷⁴⁾ 그런 상태에서 비록 임무에 소홀했다고 해서 함부로 죄주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정도가 가벼우면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복직시켰으며 매우 무거워야 쫓아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종 2년에 단행된 사병혁파를 계기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태종 2년에 사간원의 건의로, 임무를 마치면 곧 바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관계로 병사들이 감소되고 군령이 해이해지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궁궐 근처에 軍舖를 세워놓고 모이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순작을 강화했다.⁷⁵⁾ 즉 순작의 소홀함에 따른 문제를 군령의 해이해짐으로 인식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입직했다가 무단으로 나갔던 절제사에 대해 군법을 태만하였다는 죄로 그 책임을 물었다.⁷⁶⁾ 이는 군무 태만의 죄에 해당되는데, 군법으로 파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드디어 세종 2년에 이르러 숙위에 관계된 자에 대해서도 군법으로 다스리게 했다.⁷⁷⁾

그러나 군무에 소홀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긴급 사태를 맞이하여

72) 疊鼓 등이 그에 속한다.

73) 『太祖實錄』卷7, 太祖 4年 2月 癸未, 1冊, 72쪽.

74) 『太祖實錄』卷12, 太祖 6年 7月 丁巳, 1冊, 108쪽. 이 당시 갑사의 처지에 관해서는 柳昌圭, 『朝鮮初 親軍衛의 甲士』, 『歷史學報』106, 歷史學會, 1985를 참조할 것.

75) 『太宗實錄』卷3, 太宗 2年 6月 庚午, 1冊, 239쪽.

76) 『太宗實錄』卷35, 太宗 18年 2月 壬辰, 2冊, 205쪽.

77) 『世宗實錄』卷10, 世宗 2年 11月 甲戌, 2冊, 416쪽.

군대 특유의 확고한 명령 체계에 따라 이탈자 없이 신속하게 동원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갑작스러운 변란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병력을 징발하여 적당히 배치하는 절차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이에 의거하여 훈련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위반하는 자들이 생기면 이들을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훈련을 실제 상황에 준하여 실시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과 미리 숙달시킴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명령 체계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태종 때 비로소 위급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임금의 명으로 급히 군대를 집합시키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에 입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織紋驪虞旗를 제작하고 吹角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⁷⁸⁾ 이때 角 소리를 들으면 궐문에 모이는 것이 군령이었기 때문에,⁷⁹⁾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기도 했다.⁸⁰⁾ 이는 비록 평시의 훈련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과 함께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숙달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세조 3년에 오위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추진되었다.⁸¹⁾ 우선 오위에서 군령을 범한 군사는 衛將이 직계하고, 병조 및 진무소에서 摘奸할 때나 行巡할 때 금령을 범한 군사도 각각 직계하게 했다. 그리고 군령을 범한 자의 처벌에 대해, 위장·부장 및 군사의 상벌은 평상시에는 법으로써 다 논할 수 없지만, 군령의 사형죄를 범한 자가 군사라면 杖 90, 위장·부장이라면 杖 60으로 論斷하게 했다.⁸²⁾

더불어 비상소집 훈련인 취각 등을 疊鼓·疊鐘으로 개편했는데,⁸³⁾ 그럼

78) 『太宗實錄』卷18, 太宗 9年 10月 乙丑, 1冊, 516쪽.

79) 『太宗實錄』卷16, 太宗 8年 12月 戊寅, 1冊, 467쪽.

80) 『太宗實錄』卷19, 太宗 10年 5月 癸酉, 1冊, 547쪽.

81)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1983, 149쪽.

82) 『世祖實錄』卷7, 世祖 3年 4月 己酉, 7冊, 193~4쪽.

83) 『世祖實錄』卷20, 世祖 6年 6月 丁未, 7冊, 400쪽.

에도 위반자를 군법으로 다스렸던 것은 마찬가지였다.⁸⁴⁾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체계화와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오위 조직의 확립과 관련해서 마련된 제도들은 『경국대전』의 편찬을 통해 대개 법제화되었다. 다만 ‘行在時 이외의 평상시’라는 단서와 ‘평상시 야간의 직숙을 결한 자 이외의 잡범에 대해서는 형률을 적용한다’는 세주가 첨가되었을 뿐이다.⁸⁵⁾ 먼저 세주로 첨가된 내용은 군령과 결부된 것은 군법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야간 직숙을 결하는 군사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행재시, 즉 임금이 궁궐을 떠나 있을 때에는 전시에 준하는 일종의 비상시국으로 간주해서 위반자에 대해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례로 動駕 때 吹角을 誤傳했던 선전관에 대해 兵政犯軍令에 의거해 참형을 선고하기도 했다.⁸⁶⁾ 전시가 아님에도 군령을 범했다는 이유로 군법을 적용시켰던 것은 국왕의 보위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례화된 훈련이나 근무 중, 또 사전에 마련된 절차에 의거한 비상소집 연습을 통해 명령 체계에 숙달되게 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실전이 곧 훈련이며 연습이 바로 전투가 되는 상황이 조성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시기와 상황, 장소를 막론하고 군령이 확고하게 실행되어야 했다. 그것은 군법의 적절한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이 『경국대전』 등을 통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84) 『睿宗實錄』卷6, 睿宗 1年 6月 甲寅, 8冊, 384쪽.

85) 『經國大典』卷4, 兵典, 用刑.

86) 『成宗實錄』卷59, 成宗 6年 9月 乙亥, 9冊, 275쪽.

4. 맺 음 말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전시기의 혼란상을 조속히 수습하고 대외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통수 체계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군법의 운영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상벌이 분명해야 군대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공에 의해 인정된 죄를 다스리는 법칙 등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킨 군법의 적절한 운영이 군령의 확고한 실행에 기초가 됨을 재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군법 적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단 하나의 城堡나 州縣을 상실해도 책임자를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명하고 이를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제육전』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려웠다. 그리고 건국 직후 왕조 교체의 어수선했던 정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수세적이라 전시 작전에 입각했던 군령의 운용에 결부된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로 인해 법 집행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

드디어 태종 후반 특히 세종대에 들어와 적극적인 북방 개척의 추진 및 왜구의 근절을 위한 대마도 정벌 등이 시도되면서 서서히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군법의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 특히 세종 15년 婆猪野人에 대한 정벌을 시도하면서 종래의 방어적,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규모 공세를 위한 작전을 전개하면서 그 때의 필수적인 군령을 망라해 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사안별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군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대규모 정벌의 추진은 군법의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그것을 전후하여 陣法書 등이 편찬되면서 실전에도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군령의 운영 체계 및 그에 관련된 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정례화된 훈련을 통해 충분히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전쟁에 돌입한 뒤 엄하게 다스리는 것 보다 사전에 조치에 놓는 편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식한데서 나온 것으로서 종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진법서의 군령조는 단순한 훈련 교범에서 그치지 않고 유사시 군령 운용 체계의 근간으로써 군법 적용의 실제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법전의 조문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녔다. 이로써 군사를 관장하는 자가 군법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곧 일반 형률과 구분되는 군법 운영의 독특한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도 했다.

다시 오위 조직의 수립, 그리고 『경국대전』의 편찬 등을 계기로 또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단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쟁시와 그렇지 않은 때를 확실히 구분해서 군법의 적용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로써 군법 운영의 대강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방대한 조직에 많은 규모의 인원을 거느렸던 군대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전과 달리 평상시 훈련이나 연습 등을 통해 꾸준히 명령 체계에 충실히 따르도록 숙달시키며, 만약 그 과정에서 위반하거나 어기는 자가 있으면 상황 및 사안에 따라 적당히 군법을 적용하는 방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는 엄격한 기강 유지는 물론 뜻밖의 사태 발생에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드디어 정례적으로 진법 훈련을 실시하는 습진·대열, 그리고 사냥하면서 실전 위주의 군사 훈련을 행하는 타위·강무 등에서 군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상시 중앙에 머무는 금군 등이 시위나 입직 등의 근무를 수행하다가, 그리고 첩고 등을 통해 비상소집 훈련을 하다가 영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군법을 적용하는 체계가 수립되었다.

전시의 명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군법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적절하게 적용하고자 했던 것과 더불어 평상시 훈련과 연습, 그리고 금군의 근무 및 비상소집 훈련 등을 통해 이에 숙달되게 함으로써 만약의 사태라든가 갑작스러운 출동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충실하게 대비하는 제도의 마련이 이 시기 중요한 정책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6. 9. 22,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군법, 군령, 지휘관, 군사, 진법서

K C I

<ABSTRACT>

The Enforcement of Martial Law and the Operation of Military Command in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Yoon, Hoon-pyo

The martial law, which was enacted aiming to establish a command system and to maintain law and order, had been already recognized as a pivotal element in operating military organization from old times. Not to mention during the war, it was frequently applied even at ordinary times. It was because there was almost nothing enough to vie with it, as a means and device that are required when trying to build the military command rightly.

The Joseon dynasty hurriedly pushed ahead with the reshuffling work in a system of military leadership in a bid to quickly deal with confusion in light of operation in the previous period from the early its establishment, and to actively cope with a change in foreign conditions. And, in addition, it paid much attention even to a problem of applying martial law. In a state that reward and punishment are not clear, it was not easy to make military command right. And, even if its being made right, it was supposed to necessarily cause another difficult problem. There was no doubt that whether or not fairness in the application of martial law will just become a premise in smooth execution of military command, thereby having given an impetus to consolidation. Due to it, the basically operating system was built, and the more stably enforcement ground was established while being enacted through *Gyeonggukdaejeon*(the complete code of law) and others.

It was said that commanders, who lost just single fortress or village in the initial stage, are governed strictly with martial law. However, because the contents on how it will punish specifically, are not contained, it was difficult to apply it literally. Therefore, a problem about efficient execution of the law occurred. Accordingly, it puzzled its brains over the arrangement of a countermeasure.

At last, while being attempted the conquest of *Daemado*(對馬島征伐) aiming to drive the positive exploitation of the northern direction and to eradicate Japanese invaders since the latter half in *Taejong's* regime, the aggressive posture was gradually taken, and in that process, the application of applying the martial law also became different. With having arranged in advance by covering all matters related to the military command, it made soldiers know well. And, even the contents of applying the martial law according to it, were minutely defined again on how much and how it will punish depending on a situation, by issue.

Particularly with *Ginbeopseo*(tactics book) having been compiled, it recorded all matters there in relation to applying the military command and the martial law. And, other than having applied this only when training, it became a foundation that can control with the martial law even in case of emergency.

By the way, when a war broke out, it allowed generals to immediately punish by applying the martial law to those who violated the military command. However, during the time of training, it allowed them to handle after reporting it to the king when it comes to a person with high status or felons such as death penalty, and otherwise, allowed them to directly decide. Namely, it established an operating method in which whether or not application of martial law comes to be decided depending on a situation or an issue due to being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Even in the usually military duties other than the time of a war, the

martial law was often applied. The martial law was applied when there is a person who violates the military command in the turn for night duty and the Royal Guards, which guard the king and keep the royal palace, in a tactics training, which is regularly carried out, and in military training which is performed centering on actual fight. It is because of being inevitable aiming to maintain a command system and the strictly law and order even though not being the time of emergency.

Key Words : Martial Law, Military Command, Commanders, Soldiers, *Ginbeopseo*
(tactics book)

K C I